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비용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900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0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4. 6. 25.
- (3) 회 부 일 : 2024. 6.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으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이며,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 지원 없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 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

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비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u>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u>
2. ~ 8. (생략)	3. ~ 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집중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입원 및 외래 중심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외래 중심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참고자료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비교).¹⁾

- 이에 따라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전국에 13개소가 건립·지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충남대병원 등 병원 3개소, 강원도재활병원 등 센터 3개소 등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소는 건립 중에 있음.

1)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현황 >

2024. 7.

구분	권역	지역	병원/센터	건립	지정	의료기관 (선정연도)	운영 여부	비고
1	충남	대전	병원	건립		충남대병원(2018)	운영 중	
2	강원	춘천	센터	건립		강원도재활병원(2019)	운영 중	
3	전북	전주	센터	건립		전주예수병원(2019)		건립 중
4	강원	원주	센터	건립		원주의료원(2020)		건립 중
5	충북	청주	센터	건립		청주의료원(2020)	운영 중	
6	경남	창원	병원	건립		창원경상대병원(2020)		건립 중
7	전남	광주	센터	건립		호남권역재활병원(2021)		건립 중
8	전남	목포	센터	건립		목포중앙병원(2021)		건립 중
9	경북	대구	센터	건립		대구동산병원(2021)		건립 중
10	경북	안동	센터	건립		안동의료원(2021)		건립 중
11	제주	서귀포	센터		지정	제주권역재활병원(2021)	운영 중	
12	수도권	서울	병원		지정	서울재활병원(2021)	운영 중	
13	수도권	경기	병원		지정	건보공단일산병원(2021)	운영 중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임.

□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0호에 근거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③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3항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이미 있으므로, 개정실익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건립비는 각각 78억원(단, 70병상 이상은 100억원)과 36억원을, 운영비의 경우에는 7억 5천만원과 2억 4천만원을,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1억 5천만원과 6천만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

구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국비/ 지방비 비율
건립비 지원	- (50병상) 78억원 - (70병상) 100억원	- (20병상) 36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건립 후운영비 지원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5억원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0.6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지정 후운영비 지원	- (운영비) 7.5억원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5억원	- (운영비) 2.4억원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0.6억원	- (운영비) 국비 80% 지방비 20%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시적인 나열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므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미래의 지속성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포함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현행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u>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u> (이하 “ <u>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u> ”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u>공공어린이재활병원</u> 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치 및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기에 개정 실익이 없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신중검토 필요
-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임.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동법 제3조·제7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따르면 장관은 기금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시설, 장비 확충에 대한 비용을 교부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률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개정실익이 없음.

나. 충청북도

□ 고비용·저수익 소아재활치료 특성상 운영 적자 불가피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필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확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다. 경상북도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또한 고비용·저수익 소아재활치료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만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지원 대상 확대(공공어린이재활병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필요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비교〉

구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역 할		- 어린이 재활의료서비스 (입원+낮병동+외래) - 공공재활서비스 - 권역 내의 재활의료기관과 연계·협력	- 어린이 재활의료서비스 (낮병동+외래) - 공공재활서비스 - 권역 내의 재활의료기관과 연계·협력
병상 규모		- 입원(30병상 이상) - 낮병동(20병상 이상)	- 낮병동(20명 이상)
1일 환자 수		- (건립) 입원+낮병동+외래(외래 50명, 총 100명 이상) - (지정) 입원+외래(50명 이상)	- (건립) 낮병동+외래(50명 이상) - (지정) 입원+외래(30명 이상)
기 능	필수 진료과	-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 재활의학과
	필수시설	- 병동(입원, 낮병동), 외래, 재활치료실, 검사(촬영)실, 공공재활서비스 관련 실, 지하주차장	- 낮병동, 외래, 재활치료실, 공공재활서비스 관련 실
	공공재활 서비스	-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체험·교육 프로그램, 사례관리, 교육기관과의 연계, 가족지원 서비스, 재활체육, 관련 인력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체험·교육 프로그램, 사례관리, 교육기관과의 연계, 가족지원 서비스, 재활체육, 관련 인력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자료: 보건복지부